

## 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내용

### I 개정 배경

-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(이하 C2자금)의 운용현황을 보면 지원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노정
  - **전략지원부문**(제조업내 5대 업종 및 미래성장유망산업)은 지원대상 요건이 다소 느슨하게 설정되어\* 자금의 초과수요 규모가 과다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 **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이 낮은 상황**
    - \* 제조업내 5대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두 자리 단위에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, 미래 성장유망산업(바이오, 물류, 관광)중 바이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지 않은 업종을 포함
  - **일반지원부문**은 전략지원부문 한도초과로 일반지원으로 전환되는 대출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**지원비율**(지원액/대출잔액)이 **가파르게 하락**(2016.12월 21.3% → 2018.12월 6.5%)하여 일반 기업들의 당행 자금 지원효과에 대한 **체감 정도가 낮은 상황**
- 한편, 최근 들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C2자금(특히 전략지원부문)이 **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성** 대두
  - ⇒ 최근 변화된 C2자금 운용여건 및 경제·정책여건을 고려하여 **전략지원 및 일반지원부문 운용방식을 개선**함으로써 우리 본부 C2자금 전반의 **운용 실효성을 제고**할 필요

### II 주요 내용

-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인 **제조업내 5대 업종** 및 **미래성장유망산업**을 세부 업종 수준에서 **재정비**하는 한편 **지원기준을 추가**하여 **동 부문의 운용 실효성을 제고**

○ 제조업내 5대 업종은 KSIC코드상 **세분류 이하 수준**에서 **지원업종을 정비**

**지원대상 업종 조정: 제조업내 5대 업종**

**<현 지원대상>**

**<변경후 지원대상>**

24	1차 금속 제조업	24	1차 금속 제조업
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59(2592,2593, 2594,2599제외)	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(26299제외)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29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1(2919제외), 292(2925,2929제외)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
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(304제외)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주: 1) 2592 금속 열처리, 도금 및 기타금속 가공업  
 2593 날붙이,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 
 2594 금속 파스너,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
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
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

291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
 2925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
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
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

○ 미래성장유망산업(바이오, 관광 및 물류)은 바이오산업을 **바이오헬스·화학 및 관련 연구개발업 중심으로** 재편

**지원대상 업종 조정: 바이오산업**

	현 지원대상		변경후 제외대상
바이오 식품	10619	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	제외
	10749	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	제외
	10797	건강 기능식품 제조업	제외
	10799	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	제외
	1080	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	제외
바이오 화학	13999	그 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	제외
	20111	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	제외
	20119	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	제외
	203	비료, 농약 및 살균·살충제 제조업	제외
	20423	화장품 제조업	
	20493	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	신설
	20495	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	
	20499	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	제외
	22222	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
	22299	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	제외
바이오 의약	21101	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	
	21102	생물학적 제제 제조업	
	21210	완제 의약품 제조업	
	21220	한의원약품 제조업	
	21230	동물용 의약품 제조업	
	21300	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	
바이오공정 및 기기	27111	방사선 장치 제조업	제외
	27112	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	제외
	27192	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	
	27199	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	
	27213	물질검사,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	
바이오 환경	27219	기타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	
	33999	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	제외
바이오검정·정보서비스·연구개발업	39009	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	제외
	63999	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	제외
	70111	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	
	70112	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	
	70113	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	
	70119	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	
	70130	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	
	72911	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	
	7390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

○ 한편 **전략지원부문 대상요건을 강화**하여 제조업내 5대 업종 및 미래 성장유망산업에 해당하더라도 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상 **벤처기업, 혁신기업,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**(선정기준은 <참고 1> 참조)에 **해당해야 동 부문으로 지원**

- 다만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, 혁신기업 중 INNO-BIZ기업 및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대출은 **당행 여타 금융증개지원대출(C1자금)**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(대출금액의 50~87.5%를 0.5%의 저리로 지원)으로 **대부분 지원 가능하므로 제외**

\* 당행 본부(통화정책국)가 운용하며 무역금융지원, 영세자영업자지원, 신성장·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. 창업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, INNO-BIZ기업 및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은 신성장·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임

□ 또한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**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\***을 **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에 추가**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\* 최근 3개년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증가율 평균이 20% 이상이거나,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이면서 3개년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증가율 평균이 5% 이상인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

□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중에서도 당행 **C1자금을 통해 지원 가능한**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, INNO-BIZ기업 및 기술평가인증서 보유 중소기업\*에 대한 **운전자금 대출을 제외**하여 인천본부 **일반지원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**

\* 이들 세 유형에 속하는 기업들의 당행 C1·C2자금 이용가능 경로는 <참고 2> 참조

○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중 **비전기기업**에 대한 **인증서 발급 유효기간**(5년) 추가

### Ⅲ 기대 효과

□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이 지역내 실질적인 주력산업 및 인천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업으로 재설정됨으로써 **C2자금의 전략산업 지원 실효성 제고**

□ 전략지원부문 대상요건 강화 등으로 **일반지원자금 지원비율이 높아져\*** 일반 기업들의 당행 지원효과 체감 정도를 제고

\* 전략지원부문에 대한 지원신청 중 한도초과로 일반지원으로 전환되는 대출액 규모가 감소하는 데 기인

### Ⅳ 시행일자

□ **2019년 3월 1일\***

\* 금융기관은 시행일자 이후 대출취급분부터, 당행은 2019.5월 배정부부터 적용

<참고 1>

**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(개정안)상  
주요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**

지원부문	선 정 기 준
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(단,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실적은 지원 제외)
혁신기업	-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INNO-BIZ기업(단,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운전 자금 대출실적은 지원 제외) 및 MAIN-BIZ기업 - 기술신용보증기금,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발급한 '기술평가인증서' 보유 중소기업*(단,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실적은 지원 제외)  * 협약체결 금융기관이 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대출 취급점장이 <별지 제7호 서식>에 의거 확인한 경우에 한함
녹색기업	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 업체 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 기업 -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(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) 부여제품 생산업체
수출관련기업	-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

주: 밑줄은 이번 개정으로 변경될 사항

<참고 2>

**인천본부 관할지역 소재 벤처기업, INNO-BIZ기업 및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의  
당행 C1·C2자금 이용가능 경로**

